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2021년 05월 20일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38조부터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정책의 주요내용을 정하여 공시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제외정보

차단정보	제외정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본 정보에 대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정보교류를 차단함.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거나 예외적으로 교류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상의 예외적 교류의 요건충족여부, 해당 정보를 수령하는 상대방, 정보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 2.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4.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5.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 ① 사내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 :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 ② 사외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 : 회사와 회사의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
- ③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2)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 ①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 :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음

(1) 거래주의 목록

- ①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자·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②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거래제한 목록

- ①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②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1)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 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 ②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③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④ 신상품 개발, 신규 및 부수업무의 영위 시에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응방안

- ①②③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 가능하며, 해당 거래 시 항상 법령의 허용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함
- ④의 경우 해당 행위시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준수사항을 규정함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 정보교류통제·차단 관련 책임자 및 조직

-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 및 조직 :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조직 : 운용담당임원, 경영관리팀

(2)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 ① 대표이사 및 감사
- ② 내부통제기준 제43조, 제45조제1항제3호내지제5호 및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후선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사항

- ① 대상자 :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관리팀 및 리스크관리팀 임직원
- ② 해당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 제43조, 제45조제1항제3호내지제5호 및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 기타 주요 사항

-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과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 ② 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임직원 교육, 정보교류차단 내역 공개